119.일반산업용기계 가공 작업자에게 발생한 제5-6-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

성별 남 나이 49세 **직종** 일반산업용기계장치 **업무관련성** 낮음 제조업

- 1. 개요: 근로자 남OO는 OO기계에 1999년 11월에 입사하여 2005년 12월 퇴직 시까지 일반산업용기계 가공작업에서 작업하여 오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고 2005년 12 월에 수술을 받았다
- 2. 작업내용 및 환경: OO기계는 자동차 부품 및 안경기계 등 기계부품의 조립 및 제작을 하는 사업체로 근로자는 일반산업용기계 가공작업을 하였다. 보유기계는 선반 1대, 밀링기 2대(1대 폐기처분), 연마기 1대, 용접기 2대, 방전기 1대 등이다. 근무시간은 8:30 18:30까지이며 2002년도까지는 잔업을 3시간씩 월10-15회에 수행하였다. OO기계 작업력 이전에도 OO기계와 유사한 회사에서 현장 기계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으며, 총 공장생활은 20여년이 되었다. 근무도중2004년 7월 완제품 기계를 운반 중 물체에 받혀 넘어지면서 허리와 목(턱)을 땅바닥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로써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간단한 치료만하고 지내다 시간이 흐를수록 왼손에 힘이 없고 마비가 왔었다.
- 3. 의학적 소견: 근로자 남OO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2004년 7월의 사고 시점과 그 이후 2005년 8월의 진단시점의 시간 경과와 MRI상 소견(경추 5,6,7번 추간판의 변성, 팽윤, 골 극 등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의 변화)으로 보아 사고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라 볼 수 없다. 더구나 2004년 7월 사고 이전인 2000년에 회식자리에서 넘어진 후 좌상지 방사통과 제5,6,7번 경추체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치료받았었다. 업무와 관련해서는 작업 내역상 경부 질환의 주요 작업위험요인인 목을 숙이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작업은 많지 않았다.
- 4. 결론: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남OO은,
 - ① 2004년 7월 완제품 기계의 운반 중 물체에 받쳐 넘어지면서 허리와 목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으며
 - ② 2004년 7월 이전인 2000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작업과 관계없는 사고력과 경부질환으로 치료받았으며,
- ③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 내역상 경부 질환의 주요 작업위험요인인 목을 숙이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작업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어

근로자 남OO의제5-6-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작업중 사고나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